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35

발의연월일: 2020. 10. 28.

발 의 자: 강민국・金炳旭・김영식

서일준 • 윤창현 • 한무경

허은아 · 김석기 · 정동만

유의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 동력수 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발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조종면허효력의 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만을 규정하고 있고, 대여를 받은 자와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위법행위 방지의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행위 또는 대여 알선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및 제56조제1호 신설).

법률 제 호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면허증 휴대 및 제시 의무)"를 "(면허증 휴대 및 제시 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5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제3호의2를 제4호의2로, 제4호·제5호를 각각 제5호·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면허증 휴대 및 제시 의	제12조(면허증 휴대 및 제시 의
<u>무)</u> ①·② (생 략)	<u>무 등)</u>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
	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대
	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56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u> <신 설></u>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
	허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
<u>1.</u> ~ <u>3.</u> (생 략)	$2.~\sim~4.$ (현행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와 같음)
<u> 3의2.</u> (생 략)	<u>4의2.</u> (현행 제3호의2와 같음)
<u>4.·5.</u> (생 략)	<u>5.·6.</u>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